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청약안내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건본주택 내 대표문의(☎1800-0282)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가 우선합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시장 안정화와 무주택자 대상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사항만 표기하였으니,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부적격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하는 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 청약 가능(노부모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 시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 변경 :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에 1순위 자격 부여
단,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함)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 부여

-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규칙 개정 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 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시행 이전 포함)을 매수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 신고서상)부터 주택소유자로 봄

청약자격

구분	내용	청약통장
1순위	모집공고일 기준 창원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단, 과거 2년 내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구성원은 반드시 '추첨제'로 진행해야 함)
2순위	모집공고일 기준 창원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1순위 조건 외 청약통장 가입자

※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원시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 타지역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1순위 요청 충족 시 1순위(해당지역) 청약 가능

지역별 1순위 청약자격 및 예치 기준금액

구분	창원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59A, 59B, 74, 84A, B, C, D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전타입 (59A, 59B, 74, 84A, B, C, D, 102A, 102B, 103)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2순위는 청약 예치금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및 1순위 청약대상이 아닌 대상자에 한합니다.

※ 인쇄물은 인쇄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청약은 상기 예치금액에 따라 반드시 본인의 최종 판단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 가점제 / 추첨제 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 85㎡ 이하	40%	60%
전용 85㎡ 초과	-	100%

※ 추첨제 무주택자 및 주택처분서약자 우선 공급 미적용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청약통장 종류 및 준비사항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가능 여부	○	○	○

※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알면 너무나도 쉬운 청약가점제, 이것만은 꼭!

청약가점제 유의사항

구분	내용	비고
무주택 기간 (총점 32점)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p>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 ※ 배우자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의 혼인 기간내 해당. <p>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통장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정점수는 "0"점임. 	<p>TIP 무주택기간 산정은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합니다.</p> <p>실수사례 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3.25 기준 1991년 03월 25일생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내용 : 한국식 나이로는 31세로 무주택기간을 "1년이상(4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 실제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 "1년 미만(2점)"으로 입력(0)
부양가족 수 (총점 35점)	<p>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면 가능. <p>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p>부양가족 산정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경우임. 	<p>TIP 부양가족산정시 "청약자 본인은 제외"입니다.</p> <p>실수사례 예) A씨의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내용 :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10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 부양가족수는 "0명"(5점)으로 입력(0) <p>유의사항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p>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점 17점)	<p>실제 인터넷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됨.</p>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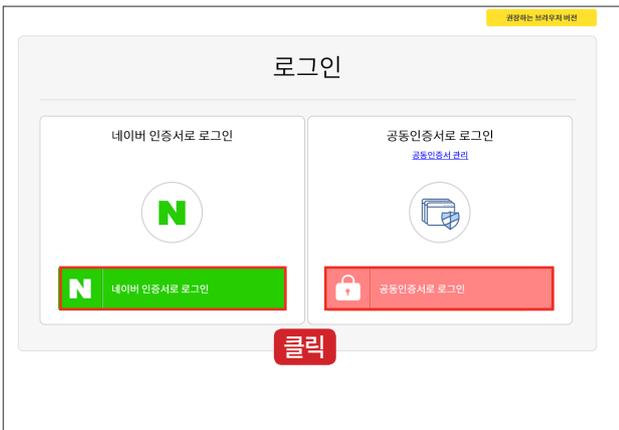
01 | 청약홈(www.applyhome.co.kr)사이트 접속 청약신청 클릭 → 해당 공급 순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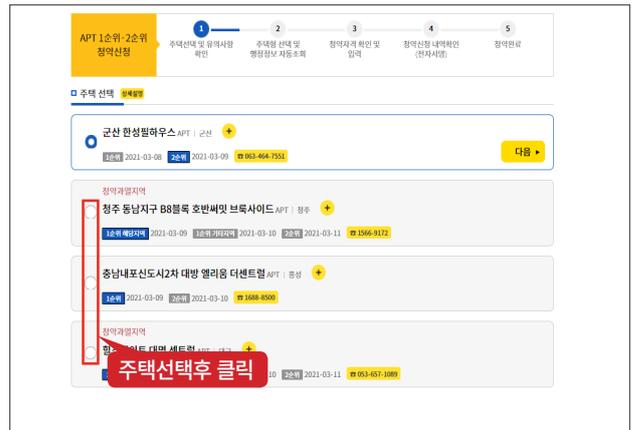
02 | 청약신청하기 클릭



03 | 네이버인증서 OR 공인인증서 로그인



04 | 주택선택



05 | 청약 유의사항 확인



06 | 주택형 선택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안내

07 |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거주지 확인

청약자격 확인

가점항목 확인

08 | 유의사항 확인

유의사항 확인

청약신청을 위한 청약대상인 3년 이내의 청약 또는 3회 청약 이상의 청약에 참가합니다. (연계별 최대 5회 및 10회 제한)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대상자를 토대로 청약순위와 청약횟수를 함께 평가하므로 위법한 청약신청은 수시취소됩니다.

청약자격 거주구분

임대주택 공급고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청약자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으로 청약.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연계개발단지' 및 '연계개발단지'가 포함될 경우 거주하는 지역은 '연계개발지역'으로 청약.

중요사항

- 청약신청일 기준 청약대상인 3년 이내의 청약 또는 3회 청약 이상의 청약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청약, 출생, 이민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대상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 사해(무효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해(무효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해(무효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9 | 청약가점점수 확인

청약가점점수 확인

청약가점점수: 23/84점

10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연락처 입력

청약 신청내역 확인

구분	연계	연계명	연계번호	연계주소	연계지역	연계종류
연계명	연계명	연계명	연계명	연계명	연계명	연계명

연락처 입력

연락처: 010-1234-5678

11 | 청약신청 완료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03월 16일입니다.

확인

12 | 청약 신청 확인

APT 1 - 2순위 청약신청내역 조회

번호	청약신청명	가입연령	순위	주계약	주계약명	연계명	청약번호
1	2021-03-09	국외	1순위	초신축 100% 1/1200	0849164	연계명	연계번호

확인